#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46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한병도·장철민·임오경

김영배 • 민병덕 • 이해식

양부남 • 안도걸 • 정일영

서미화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에 관 한 사전신고 및 공표·보도 전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보도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 • 보도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서면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 중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로 한정함(안 제108조제3항).
-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였으나, 공표·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08조제1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 자
- ④ 제3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였으나, 공표·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 지 등) ① · ② (생 략) 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 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 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 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 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 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흥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 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현행과 같음) 5. (생략) <삭 제>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자가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 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④ ~ ③ (생 략) <신 설>

①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 ⑤ (생 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 4. (생 략) <신 설>

⑦ ~ ⑫ (생 략)

<삭 제>

④ ~ ① (현행과 같음)

① 제3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였으나, 공표 •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① (현행 제14항과 같음)

- ① ~ ⑤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0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⑦ ~ ⑫ (현행과 같음)